KOSHA GUIDE

C - 56 - 2017

- (3) 목재가공용 둥근톱은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한 후 사용하고 면장갑을 착용한 채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4) 천정, 벽체의 마감작업에 타정총, 타카(Tacker) 등을 사용할 때에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안경,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5) 타일 절단작업에 그라인더, 핸드커터(Hand cutter)기 등 다른 용도의 전동 기계·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타일 전용의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6) 실내에서 뿜칠에 의한 도장작업 시 적정한 공기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보안경,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이동식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심한 손상, 부식이 없고 발판 폭이 30 cm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또한 다리부위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8) 도배작업 등에 말비계를 사용할 때에는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°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의 하단부에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석재, 유리 등 중량물 양중작업 시 적정한 용량의 윈치(Winch)를 사용하고 견고한 구조의 앵커(Anchor)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0) 코킹, 외벽 도장작업 등에 사용되는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는 옥상의 견고한 앵커, 구조물 등에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고 별도의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또한 근로자는 안전대를 구명줄에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11) 기계식 고소작업대(차량탑재형, 시저형 고소작업대 포함)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투입전에 정기검사증 확인 후 아웃트리거(Outrigger)를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에설치하고,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고소작업대의 전도에 의한 재해를예방하여야 한다.